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3월 4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고,

○ 시·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무를 도로 환수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

4. 주요골자

### 【보건위생과】

○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“식품으로 기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 해부” 조항이 삭제되어 위임조항에서도 삭제하고,

○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“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면허취소 등”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
### 【원에유동과】

-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,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·군에 재 위임하여 처리하던 “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” 사무가 농림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사무가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 신설함.

### 【축 산 과】

- 현재 시·군에 위임되어 있는 “축산물 관련 영업장의 인·허가 등 사무”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
### 【지역개발과】

-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“국토이용계획 지형도면의 승인에 관한 사무” 등을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- 체육시설 등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시·군에 추가로 위임함

### 【교 통 과】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,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“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” 등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-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·군에 재 위임하여 처리하던 “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”가 도지사의 권한사무가 되어 위임조항에 신설함

## 【도 로 과】

- 공공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었던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폐지되고,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함.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·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,

- 건설종합분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
- 보건위생과 소관의 조리사 면허증 관련사무,  
교통과 소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화물자동차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등 관련사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- 보건위생과 소관 사체해부사무의 근거 조문 폐지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,
- 원예유통과 소관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와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와

**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는**

시장·군수에게 재 위임했던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·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,

- **축산과 소관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관리에 관한 사무는** 지금까지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, 규모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며,

**지역개발과 소관 국토이용관련사무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,**

도시계획결정 관련사무는 관련 법조문과 세부 위임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

- **도로과 소관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통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,**

- **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**

**축산과 소관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관리에 관한 사무는** 축산물 등의 수거검사사무를 제외하고 그동안 시장·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은 지방분권 및 권한의 이양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## ○ 별표1의 권한위임 사무 중

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개발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되므로,

- “도시기반시설”은 ⇒ “기반시설”로
- “도시계획의 결정”은 ⇒ “도시관리계획의 결정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## 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권한의 위임 필요성 여부,

제7호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”를 위임하였으나,

근거법령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시하고 있는 바

- 제25조 제3항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과
- 제25조 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,
-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,

제7호를

- ⇒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”로 수정하고,

근거법령을

⇒ “동법 제30조 제5항 및 제6항”,

“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제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만 위임하고 있으나,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3항의 실시계획의 변경 폐지와 동법 제89조의 이행담보 권한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므로

도시계획 시설사업 “실시계획 인가 및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”를

⇒ “실시계획 인가, 변경, 폐지 및 이행담보, 열람 및 고시”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.

**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**